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3
----------	-----

2025. 3. 21.(금)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우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24. 12. 기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1,131개소이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32,769명임.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충청북도 시군별 장기요양 현황(시설·종사자)>

(단위 개소, 명, 24.12.31.기준)

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현원)
계	1,131	32,769
청주	486	15,415
충주	168	4,790
제천	124	2,631
보은	32	1,436
옥천	57	2,365
영동	59	1,617
증평	29	799
진천	49	974
괴산	40	941
음성	66	1,372
단양	21	429

- 충북은 이미 2023년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 도 내 장기요양요원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신체적·정신적 소진 위험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노인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

증진 사업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지원 사업)에서는, 제6호에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을 신설하였음.
- 이미 서울, 광주, 경기 등 타 시도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바 본 호의 신설은 내용상 타당함.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서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호의 신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의2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복지수당 지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현재 복지포인트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5개 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에서 자체 예산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내용적으로도 타당함.

<충청북도 시군별 장기요양요원 수장 지급 현황>

대상자	금액(월, 년)	비고
장기요양요원 전체 (충주)	3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3개월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장기요양요원 전체 (제천)	5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장기요양요원 전체 (괴산)	2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장기요양요원 전체 (음성)	30,000원/월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전체 (진천)	30,000원/월	장기요양요원, 24.7.부터 지급

- 제2항에서는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 -- 없을 때에는 -----.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 설></u> 6. (생략)	제6조(지원 사업)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u>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 설></u>	<u>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u>

	<u>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u> <u>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u> <u>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u> <u>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u> <u>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u> <u>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u> <u>따로 정한다.</u>
--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유

- 본 개정안은 안 제6조의2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요구되지만, 본 조항은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제 지급을 위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